

문서번호 :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2018-10
 시행일자 : 2018.05.09
 수 신 :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
 참 조 : 특별공급 담당
 제 목 :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특별공급 명단 요청의 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에서 건설하는 “화명 센트럴 푸르지오” 관련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대상자 선정 후, 2018년 5월 15일 13시까지 추천자 명단을 e-mail 회신 부탁 드립니다.
3. 상기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걸로 간주하여 타기관에 임의 배정토록 하겠습니다.

- 아 래 -

1) 사업 개요

- 공급 위치 : 부산시 북구 화명동 1554-4번지 외 176필지
- 공급개요 : 지하 3층 ~ 지상 35층 9개동 총 886세대(일반 분양 642세대)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
 · 주택형 : 39㎡, 59㎡A, 59㎡B, 59㎡C, 74㎡A, 74㎡B, 84㎡A, 84㎡B, 84㎡C

2) 특별공급 일정(예정)

- 입주자 모집공고 : 2018.05.24(목)
- 견본주택 오픈일 : 2018.05.25(금)
- 특별공급 청약 일정 : 2018.05.29.(화) 08:00~17:30 아파트투유 홈페이지(www.aprt2you.com)
- 당첨자발표 : 2018.06.07.(목)
 아파트투유 홈페이지(www.aprt2you.com)
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prugio.com/house/2018/hwamyongcentral>)

※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무자 모집 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3) 세대수 배정

구분	구분	39	59A	59B	59C	74A	74B	84A	84B	84C	계
우수선수	대상자						1	1			2

4) 특별공급 업무 담당자 및 회신메일

- 과장 홍원석(010-3579-3257)
- e-mail : hws0727@naver.com

불 임 : 1.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. 특별공급 추천양식. 끝

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사무소장(직인생략)

※ 붙임1.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기간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I

특별공급자격

■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05.24. 예정) 현재 '무주택세대 구성원'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.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
-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.(단, 추후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제출 서류 및 금결원 주택 소유 관련 조회 사실 결과와 청약 접수시 기재했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부적격 될 수 있음.)

■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

-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(전 주택형):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
- 청약부금(85㎡ 이하만 가능): 매월 약정납입일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이상

II

행정사항 및 유의사항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 신청일[2018.05.29.(화)]에 인터넷(아파트투유 홈페이지)를 통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로 선정 되지 못하며 계약 또한 불가 합니다. 이럴 경우 배정되었던 세대는 기타 특별공급 유형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 추첨분으로 배정되거나, 특별공급 청약 미달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 됩니다.

■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결과 상기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당첨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-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,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(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)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를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특별공급간(기관추천, 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 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및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,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■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로 중복청약을 허용하되,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.

■ 동일세대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.

Ⅲ

**현장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
(일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)**

-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05.24. 예정)이후 발급분에 한함
-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
- 주민등록표등·초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(각 1통)

해당서류(청약자 기준)		내용
필수	특별공급신청서	· 신청일에 신청장소(건본주택)에 비치
	무주택서약서	· 신청일에 신청장소(건본주택)에 비치
	신분증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인감증명서,인감도장	· 용도 : 주택 특별공급 신청용
	주민등록표등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주민등록표등본	·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
	가족관계 증명서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발급
	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	·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
해당자	기관장의 추천서	· 해당기관 → 사업주체 추천자 별도 통보할 경우 불필요

※ 주민등록등본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※ **현장 방문 접수는 일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**

■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.

구비서류	비 고
위임장	·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건본주택 비치)
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
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	·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붙임2. 특별공급 추천양식

1. 대상자

구분	주택형	순번	성명	생년월일	연락처
우수선수	74B	1			
	84A	1			